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56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조계원 · 정준호 · 김문수
최혁진 · 박지원 · 양부남
안호영 · 이정문 · 박홍배
임문영 · 김 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

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u> <u>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u> <u>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u> <u>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을 위반한 자</u>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u>2. · 3.</u> (생략) ② ~ ④ (생략)	<u>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5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u>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한 사람</u> <u>3. · 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